

참고자료2. 200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자금지원지침

가. 자금지원범위

- 1)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 ESCO투자사업(성과보증계약에 한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은 10% 우대(대기업 : 80→90%, 중소기업 : 100%) 한다.
- 2) 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하며, 보수비는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 3)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집단에너지사업 예산으로만 지원한다. 다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발생된 잉여열이나 공정발생열을 회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공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4)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당해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당해 제품의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6개월분의 금액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자금지원조건

1) 시설자금

사업명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비고(억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	500억원 이내 (사업장당 250억원 이내)	3년거치5년 분할상환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에 따름	1,400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200억원 이내 (동일사업자당)			2,437		
	건물효율등급 인증지원사업	300억원 이내 (건설허가사업장당 100억원 이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350		
	ESCO 투자사업	270억원 이내 (동일사업자당) 다만, 동일투자지당 15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분할상환		140		
	수요관리 투자사업	50억원 이내	3년거치5년 분할상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지역냉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	없음		8년거치7년 분할상환		500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합 계					5,827		

주 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 2) 비고란은 지원규모이며,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2) 운전자금 (중소기업에 한함)

사 업 명	지 원 대 상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 공단이 인증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10억원 이내	1년거치2년 분할상환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분할 상환 운영요령」에 따름
	· ESCO			
	·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창업기업			

주1)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 다만,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운전자금은 해당사업의 시설자금의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다. 자금지원대상자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음)

사 업 명	자 금 지 원 대 상 자
I.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동 협약의 기 간이 완료되고 계속 협약에 참여하고자 참여의향서 및 해당 이행계획서를 제출 한 자
II.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다만, 동 지침 적용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함)
III.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IV. 수요관리투자사업	○ 자금지원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V. 건물효율등급인증 지원사업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자
VI. ESCO투자사업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VII.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참조